

case
3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요약

사례명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7997 (2023.04.10.)
사실관계	여러 국가로부터 부품들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에서 주문 관리, 하드웨어 제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및 시스템 설치, 품질 관리 및 보증, 주문·시스템 마감 및 최종 점검 하여 최종 제품인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and Surveillance System, VMS)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국가에서 주요 부품들이 조달되고 조립이 이루어졌으나 어느 조립 공정도 지배적이지 않았음• 미국에서 서브 어셈블리들과 부품들을 VMS로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최종 조립 공정에서 비로소 VMS가 완성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근거법령	- Title III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 2511–2518)

I 판정사례³⁾

사 례 명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7997 (2023.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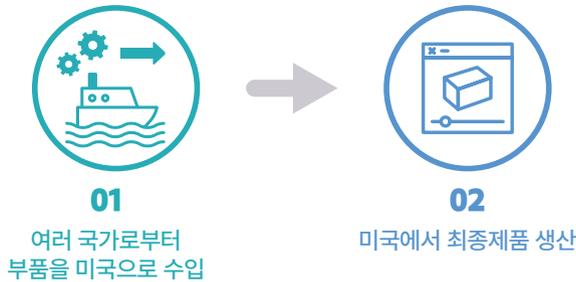
사실관계

요청자 Security Lab Inc. (대리인: Geme Rosen Law Group)

제품명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and Surveillance System, VMS)

		구분	부품명(원산지)	
제품	구성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시(대만) • 마더보드(중국산) • 중앙처리장치(CPU)(코스타리카, 베트남 또는 말레이시아산)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싱가포르 또는 태국산) • 광학 드라이브(중국산) • 메모리 모듈(중국산) • 그래픽 카드(중국산) • 알람 보드(중국산) • 직렬 ATA 컨트롤러(ATA Controller)(대만산) •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 컨트롤러(RAID Controller)(싱가포르산) • 전원공급장치(PSU)(중국산) • 컴퓨터 팬(중국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대만산) • 네트워크 카메라(대만, 한국 또는 중국산)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중국산) 	
			소프트웨어	Security Lab, Microsoft Window 등(미국산)
			기타 부품	케이블, 브래킷, 베젤, 나사, 스트랩 등(다국적)
			용도	• 영상 감시 작업 수행 및 관리용

제조과정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상세공정

1. 다양한 국가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
2. 미국 제조공정
 - (1) 주문 관리
 - 고객 주문을 접수 후 작업 지시서를 발행, 필요한 자재명세서(BOM)를 식별
 - (2) 하드웨어 제조(최대 30단계의 공정, 60-90분 소요)
 - 전동 드라이버, 글루, 타이 스트립 등을 사용해 하드웨어, 서브 어셈블리, 부품 조립
 - (3)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시스템 설치, 구성 및 관리(18단계의 공정, 60-90분 소요)
 - 프로그래머, 개발자, 테스터,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주문자 맞춤(build-to-order)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및 코딩하여 완성된 하드웨어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합, 설치 및 구성
 - (4) 품질 관리 및 보증(14단계의 공정, 약 60분 소요)
 - 영상·오디오 성능과 네트워크 기능 검사를 포함한 품질 점검과 시험을 수행
 - (5) 주문-시스템 마감 및 최종 점검(6단계의 공정, 약 15분 소요)
 - 완성된 VMS의 사진 촬영, 새시에 위조 방지 스티 부착 등 마감 공정 수행

쟁점사항

- ✓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19 U.S.C. § 2511~2518)』에 따르면, 물품이 특정 국가 또는 기관의 제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국가 또는 기관에서 유래한 자재로 구성된 경우, 해당 물품이 상업상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전혀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란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 본질적 성질, 상업적 용도에 변화를 겪은 물품을 의미하며,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자재가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성질의 변화를 인정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구성 부품의 특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어야 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Ct. Int'l Trade 2016)

- CBP는 부품의 생산 또는 조립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어느 한 국가의 작업도 제조 공정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장소를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70315 (2011.07.28.)*

사례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과 영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최종 조립 및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진 위성전화기의 원산지판정

판정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과 영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치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나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 판단하여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03555 (2012.04.23.)*

사례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을 포함한 오실로스코프가 싱가포르에서 조립되고 미국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된 경우 원산지판정

판정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제조 공정을 지배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에서의 최종 조립이 제품을 완성시켰기에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주요 부품들이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되고 VMS 제조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지배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조립을 통해 개별 부품들이 VMS로 최종 완성되므로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지배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최종 조립을 통해 VMS가 완성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미국임

II 시사점

• 어느 한 국가의 제조공정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27997 (2023.04.10.), <https://rulings.cbp.gov/ruling/H327997>
- CBP Ruling HQ H170315 (2011.07.28.), <https://rulings.cbp.gov/ruling/H170315>
- CBP Ruling HQ H203555 (2012.04.23.), <https://rulings.cbp.gov/ruling/H203555>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